

자동차 온라인 판매제한 완화 업무지침

1. 자동차온라인 광고와 관리업(매매) 구분

가.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연결되도록 단순광고의 장을 제공하는 경우,

-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사업자, 개인)가 옥션 등 광고의 장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 판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종류, 연식, 색상 등 정보를 게재하면, 판매자가 제시한 동 차량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제시한자와 거래교섭을 하게 됨
 - 그 과정에서 매매당사자는 통신판매업자(인터넷 운영자) 관여 없이 거래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거래이행에 필요한 차량등록 등의 제반 절차도 당사자간 책임으로 하게 됨
 - 즉 통신판매업자(인터넷 운영자)가 판매차량에 관한 정보를 게재 확인할 수 있는 광고의 장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 할 뿐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차량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으며, 판매차량에 관한 거래 성립여부와 그 이행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옥션 등 인터넷 광고행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상 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 53조에 의한 매매업 등록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며 일정액 이하 광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 부과 방식 등은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결정

나.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매매 또는 알선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매매·알선 행위에 해당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매매업으로, 일정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및 품질보증 의무도 준수하여야함

※ 매매업 등록 없이 매매 또는 매매·알선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불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지도·감독 철저

시·도지사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무등록 통신판매업자가 중고차 매입 또는 알선하는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분기별 단속사항 보고시 함께 우리부로 보고할 것. 끝.